

총리령

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총리 (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)
연 월 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및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고,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법제처,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(2023. 8. 16. ~ 8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15명(5급 6명, 6급 8명, 7급 1명)”을 “16명(4급 1명, 5급 6명, 6급 8명, 7급 1명)”으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1]

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8조제1항 관련)

총계	164
정무직 계	2
위원장(장관급)	1
부위원장(차관급)	1
일반직 계	161
고위공무원단	5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3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1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(비서)	1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통계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보건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공업연구관·환경연구관·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	12
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(비서)	2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통계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보건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공업연구관·환경연구관·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	55
행정주사·공업주사·통계주사·환경주사·시설주사·	

전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· 보건주사 · 사회복지주사 · 공업연구사 · 환경연구사 · 시설연구사 또는 보건 연구사	50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통계주사보 · 환경주사보 · 시 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	16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통계서기 · 환경서기 · 시설서기 · 전산서기 · 방송통신서기 또는 운전서기	2
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통계서기보 · 환경서기보 · 시 설서기보 · 전산서기보 · 방송통신서기보 · 운전서기 보 또는 별정직 9급 상당(비서)	1
기록연구사	1
전문경력관 나군(속기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비상계획 담당)	1
경찰공무원 계	1
경정	1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획조정관) ① (생략)	제4조(기획조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, 심사총괄담당관, 법무감사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, 각 담당관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5조(운영지원과장) 운영지원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5조(운영지원과장) ----- 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6조(개인정보정책국) ①·② (생략)	제6조(개인정보정책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③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④ ~ ⑦ (생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7조(조사조정국) ①·② (생략)	제7조(조사조정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하고, 팀장은 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</u> 으로 보한다.	③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 ----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</u> ---- -----.

④ ~ ⑨ (생 략) 제8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) ① (생 략)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 중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· 침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 명(4급 또는 5급 1명)과 그 밖의 정원 중 <u>15명(5급 6명, 6급 8명, 7급 1명)</u>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 <u>제10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</u> <u>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」 제24조제5항에 따라</u> <u>국제협력담당관은 임기제공무</u> <u>원으로 보할 수 있다.</u>	④ ~ ⑨ (현행과 같음) 제8조(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6명(4급 1명, 5급</u> ----- ----- -----. <u><삭 제></u>
---	--

신 · 구 정원 대비표

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]

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8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 ·	· ·	· ·	
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<신 설>	<u>3</u>	+3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<신 설>	<u>11</u>	+11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(비서)	<신 설>	<u>1</u>	+1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 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통계사무 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공업연구관 · 환경연구관 · 시설 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	<신 설>	<u>12</u>	+12
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<u>3</u>	<삭 제>	-3
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<u>11</u>	<삭 제>	-11
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(비서)	<u>1</u>	<삭 제>	-1

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공업연구관 · 환경연구관 ·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</u>	<u>12</u>	<u><삭 제></u>	-12
.	.	.	
.	.	.	